

목록규칙상에서 참조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Historical Developments of References on Cataloging Rules

이 양 숙(Yang-Sook Lee)*

〈목 차〉

- | | |
|-----------------------|----------------------|
| I. 서론 | 5. AACR |
| II. 참조의 기능 | IV. 국내목록규칙상에서 참조의 규정 |
| III. 국외목록규칙상에서 참조의 규정 | 1. 朝鮮東書編目規則 |
| 1. 파니찌의 규칙 | 2. 東書編目規程(草) |
| 2. 쥬이트의 규칙 | 3. 韓國目錄規則(修正版) |
| 3. 카터의 규칙 | 4. 韓國目錄規則 3版 |
| 4. ALA 1949 | V. 결론 |

초 록

본 논문에서는 목록규칙상에서 참조의 변천과정을 고찰하였다. 참조는 파니찌와 쥬이트의 목록규칙에서는 상호참조라고 하였으며, 카터의 사전체목록에서 처음으로 정의되었다. 파니찌 규칙 이후 보라참조와 도보라참조로 발전하여 AACR2에서 지금까지의 참조에 관한 규정을 망라하여 체계적으로 표현하였다. 참조의 대상은 개인명, 단체명, 서명, 주제명 등이고, 참조의 종류는 보라참조, 도보라참조, 이름-서명참조, 설명참조의 4가지로 구분하였다. 결국 참조는 동일한 저자나 서명의 상이한 형식을 동일한 접근점으로 하여 관련 저작을 집중하는 유일한 장치로써 특히 현재의 온라인목록에서는 그 기능과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주제어 : 참조, 상호참조, 보라참조, 도보라참조, 설명참조

Abstract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historical developments of references on cataloging rules. References is named cross reference on The Panizzi' Rules and Jewett' Smithsonian Report, and defined at Rules for a Dictionary Catalog by Charles A. Cutter. References is developed to "see reference", "see-also reference", "name-title reference", and "explanatory reference" on AACR2. References have traditionally been regarded as syndetic devices, making it possible to retrieve and connect related works. Conclusionally, it functions as a tool which directly connect all the works related but in different formats of a same author name and a same title name. In online catalogues, it means that the role and function of references have increasingly become extended to be very important.

Key Words: References, Cross-references, See reference, See also reference, Explanatory reference

* 동의대학교 중앙도서관 의학분관과장

• 접수일 : 2003. 11. 22 • 최초심사일 : 2003. 12. 5 • 최종심사일 : 2003. 12. 10

I. 서 론

다양한 주제들이 여러 가지 형태의 문헌들로 표현되는 각종 정보가 범람하고, 정보를 탐색하거나 요구하는 형태도 각양각색인 정보화사회에서, 목록은 이용자가 요구하는 모든 정보를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해 관련된 모든 자료를 찾아서 한곳에 모으거나 연결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용자들이 기억하고 있는 접근점의 형식이 목록의 그것과 항상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목록에 접근하는 방법이나 논리가 목록규칙의 규정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으며, 가능한 여러 가지 형식의 저록을 사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된다.

따라서 도서관목록은 이용자들이 쉽게 탐색할 수 있도록 함께 연결된 여러 가지 이름의 참조시스템을 통하여 목록에 있는 모든 관련레코드를 연결하므로써, 이용자들이 찾는 특정 저작을 이용할 수 없을 경우에 유사한 자료를 선택하거나 또는 더 나은 방향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특정 저자의 모든 저작이나 특정 저작의 모든 판들에 관한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전통적으로 책자목록과 카드목록에서는 특정 문헌이나 관련 저작을 검색하거나 연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수단을 사용해 왔다. 카드목록에서는 기본저록과 분출저록, 상호참조, 부출저록, 이름-서명부출저록, 총서부출저록, 계층기술 등과 같은 저록을 사용하였다.¹⁾ 분출저록과 부출저록은 주로 기술부에 기재된 데이터요소 중에서, 기본표목으로 채택된 접근점 이외에 2인 이상의 공저서나 역자와 같이, 필요에 따라 추가적으로 제공된 접근점으로 사용되었고, 상호참조는 특정 문헌의 접근점으로 사용되는 데이터요소의 이형을 연결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현재 온라인목록에서는 문헌이 지닌 서지적 특성을 기술요소로 삼고, 이 기술요소로 레코드를 구성하며, 특정 레코드를 검색하거나, 다른 레코드와 연결하고 있다. 더구나 이론상 모든 데이터요소가 접근점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기본표목과 부출표목을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다만 이들 기술요소가 모두 서지레코드를 연결하는 도구로 사용된 것은 아니며, 오히려 기술요소 중에서 중요한 접근점으로서 특정 저자나 특정 서명이 다른 명칭으로 나타나거나 다르게 표현되는 경우에 이들 관련 문헌을 연결하는 기능을 가진 장치로서 전거제어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현재의 서지정보망에서는 자관의 목록이 외부의 다양한 서지데이터베이스와 연결되어 있고, 또한 다른 목록과 통합되어 종합목록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상이한 데이터베이스간에 사용된 접근점을 상호연결할 수 있도록 전거제어를 수행

1) Barbara Ann Barn Tillett, "The History Linking Devices," *Library Resources & Technical Services*, Vol.36, No.1(1992), p.23.

하므로써 외부 데이터베이스를 자관의 목록에 효율적으로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전거제어는 특정형식의 기본표목을 채택하고, 이와 상이한 형식의 이름과 채택된 표목을 참조로 연결하는 구조로써, 전거제어의 개념은 상당부분이 사실상 전통적인 참조의 기능을 이어 받은 것이다. 아직은 국내에서 전거제어가 그다지 활성화되지는 않았지만 전거업무 아웃소싱이나 분담전거업무들이 곧 현실화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특정 접근점의 상이한 이름 상호간을 연결하는 장치로써 참조의 기능을 살펴보고, 국외목록규칙 중에서 파니찌 91규칙²⁾³⁾, 쥬이트의 규칙,⁴⁾ 카터의 사전체 목록,⁵⁾ ALA 1949,⁶⁾ AACR1,⁷⁾ AACR2⁸⁾와 국내목록규칙 중에서 朝鮮東書編目規則(改訂版),⁹⁾ 東書編目規程(草),¹⁰⁾ 韓國目錄規則(修正版),¹¹⁾ 韓國目錄規則 3版¹²⁾에서 규정하고 있는 참조의 변천과정을 고찰하고자 한다.

II. 참조의 기능

파니찌 시대에 목록이 책자목록이었을 때에는 특정 도서에 대한 다른 접근점은 상호참조형식을 취했으며, 부출저록에 관한 규정은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1901년 LC에서 인쇄된 목록카드를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목록구조에 전반적인 변화가 초래되었고, 인쇄카드의 사용을 통해 부출저록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출현하게 되었다. 즉, 인쇄카드의 도입으로 기본저록카드의 제일 상단에 부출표목을 타자하는 경제적인 방식으로 부출저록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으며, 따라서 추가 접근점을 제공하기 위해서 간략한 상호참조를 사

-
- 2) Nancy Brault, *The Great Debate on Panizzi's Rules in 1847-1849 : the Issues Discussed* (Los Angeles : The School of Library Service & The University Library, University of California, 1972), pp.85-89.
 - 3) Michael Carpenter and Elaine Svenonius ed., *Foundations of Cataloging : A Sourcebook* (Littleton : Libraries Unlimited, 1985), pp.3-14.
 - 4) Charles C. Jewett, *Smithsonian Report on the Construction of Catalogues of Libraries, and their Publication by Means of Separate, Stereotype Titles with Rules and Examples*. 2nd ed.(Washington : Smithsonian Institution, 1853).
 - 5) Charles Ammi Cutter, *Rules for a Dictionary Catalog*. 4th ed.(Washington, D.C. :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04).
 - 6)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ALA Cataloging Rules for Author and Title Entries*, 2nd ed.(Chicago : ALA, 1949).
 - 7)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Anglo-American Cataloging Rules, North American Text* (Chicago : ALA, 1967).
 - 8)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Anglo-American Cataloging Rules*. 2nd ed. Rev.(Chicago : ALA, 1988).
 - 9) 朴奉石 編, 朝鮮東書編目規則, 改訂[版](國立圖書館, 檀紀4287[1954]).
 - 10) 朴熙永 編, 東西編目規程(草)(서울 : 韓國圖書館協會, [1955]).
 - 11) 韓國圖書館協會 編, 韓國目錄規則, 修正版.(서울 : 韓國圖書館協會, 1966).
 - 12) 韓國圖書館協會 編, 韓國目錄規則 : 記述, 標目을림指示篇, 3版(서울 : 韓國圖書館協會, 1983).

용하기보다는 오히려, 완전한 부출저록을 선호하게 되었다.

부출저록은 1902년의 ALA 규칙(Advance Edition)에서 처음으로 규정되었으며, 1904년 카터가 그의 규칙 4판에서 비로소 “부출저록”을 정의하였다. 실제로 초기의 목록규칙은 부출저록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와 상호참조를 사용해야 할 경우를 구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부출저록이 도입되기 전에 상호참조는 서지레코드의 2차 접근점을 제공하였으며, 관련된 이름 또는 저작에 대한 표목을 연결하는 도구였다.

실제로 부출저록과 상호참조 두 개 중의 어느 것을 사용하느냐에 대해서는 그 경계가 불분명하였다. 1902년 목록규칙에 “참조 또는 부출저록”을 요구하는 규칙이 있었고, 그러한 규칙은 현재의 AACR2에 이르기까지 지속되고 있다. 1908년 목록규칙에는 상호참조 또는 부출저록의 선택을 요구하는 14개의 규칙이 있었다. 다른 자료를 연결하기 위해서 두 가지 예외가 있었지만 나머지 모두는 서지레코드에 대한 접근점으로서 표목을 제공하는 것이었다.¹³⁾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출저록을 사용할 때와 상호참조를 사용할 때를 지시하는 것이 더욱더 분명해졌다. 즉 부출저록은 변함없이 서지레코드에 대한 추가 접근점으로 사용되었으며, 상호참조는, 간단하게 참조라고 하면서, 이름이 변형되었을 때 사용되었다.¹⁴⁾

또한 온라인목록 환경에서는 목록의 개념적 구조를 서지레코드와 제어레코드로 구분하여 서지레코드내에 있는 모든 데이터요소를 접근점으로 사용하여 특정문헌을 찾고 모으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제어레코드는 서지레코드의 접근점으로 사용되는 이름(즉, 개인명, 단체명, 회의명, 저작 및 충서명)과 주제를 제어하기 위해서 참조를 통하여 관련 문헌을 연결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상호참조를 규정한 최초의 목록규칙은 파니찌의 91규칙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상호참조에 관한 정의는 1904년 카터의 사전체목록에서 처음 제시되었다. 카터의 정의¹⁵⁾에 따르면, 상호참조는 “특정 주제에서 다른 주제로의 참조”를 의미하며, 참조는 “저자나 서명, 주제아래(발행사항을 생략하고) 문헌을 기술한 간략저록으로서 다른 표목을 지닌 완전한 저록으로 안내하는 것”으로, 때로는 발행사항 없이 단순히 저록이라는 의미로 묵시적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즉, 카터는 완전저록과 간략저록을 인정하고, 참조는 발행사항이 생략된 간략저록으로써 완전저록을 작성하는데 드는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면서도 저록간의 연결수단으로 이해하였다.

특히 인쇄카드의 도입으로 부출저록이 적은 노력으로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참조를 대신한다고 하여 참조와 부출저록과를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사전체목록에서는 저록이나 부출저록, 참조를 구별하는데 그다지 의미를 두지 않고 모두

13) Tillett, *op. cit.*, p.28.

14) Barbara Ann Barn Tillett, *Bibliographic Relationships : Toward a Conceptual Structure of Bibliographic Information used in Cataloging*(Los Angeles : University of California, 1987), p.98.

15) Cutter, *op. cit.*, pp.18-21.

대등한 접근점으로 취급하였다. 아울러 참조의 종류를 분출참조, 상호참조, 표목참조, 주제참조 등으로 구분하였다.

AA Code(ALA 1908)¹⁶⁾와 ALA 목록규칙(ALA 1949)에서는 상호참조를 “하나의 표목에서 다른 표목으로 안내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 AACR1과 AACR2에서도 “하나의 표목이나 저록에서 다른 표목이나 저록으로 안내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한국목록규칙에서는 유일하게 朝鮮東書編目規則 用語解義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참조서표는

- ① 한 표목에서 다른 표목으로 지시하는 서표. 즉 서명의 이명 또는 저자의 별명, 호(號)등을 표목으로 하고 「見-何何」라 기입하는 서표.(서명참조서표, 저자참조서표)
- ② 2주제 이상으로 된 도서로서 한 주제하에 분류한 후 다시 다른 주제에 분류를 지시하는 기록을 기입한 서표.(분류참조서표)
- ③ 표목이 2종 이상의 표기가 있을 때에는 다른 표기를 기입한 서표.(표기참조서표)
관청의 취사(取捨)가 곤란할 때에 작성하는 관청참조서표와 표목이 2종 이상으로 발음이 있을 때에 작성하는 발음참조서표의 2종이 있다.

이 규칙에서도 역시 참조는 하나의 표목이나 저록에서 다른 표목이나 저록으로 안내하는 것으로 정의되었으며, 서표는 도서에 관한 개개의 기록을 카드에 기입한 것을 의미하고 「見-何何」는 「~을 보라」, 즉 보라참조를 의미한다. 서명참조서표와 저자참조서표는 서명이나 저자의 다른 이름으로부터 기본표목으로 보라참조를 작성하는 것이고, 분류참조서표는 주제명참조 대신 분류참조를 작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관청참조서표를 작성하는 경우는 서명에 대한 부출저록을 작성하는 것과 같고, 발음참조서표는 서명이나 저자명의 다른 형식에 대한 참조를 작성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밖에 각종 용어집에서 정의하고 있는 내용을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ALA 용어집¹⁷⁾에서는 참조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1) 어떤 저작을 지칭하고, 특수한 서지기능을 위해 그 저작을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는 완전한 일련의 서지요소(Z39.29)
- (2) 목록과 색인에서 하나의 표목에서 다른 표목으로 지시하는 것

한편 ALA용어집에서는 보라참조와 도보라참조, 일반참조 이외에 설명참조를 규정하고 있는데, 설명참조는 “표목의 범위를 한정하거나, 변경 전후의 단체명에 대한 참조, 일련의 회의에 대한 복수의 표목에 대한 참조와 같이 관련 표목을 채택할 때의 상황을 설명한 정교한 ‘보라’참조나 ‘도보라’참조”로 정의하고 있다.¹⁸⁾

16)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Anglo-American Code*(Chicago : ALA, 1908).

17) ALA, *The ALA Glossary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Chicago : ALA, 1978).

18) *Ibid.*, p.88.

6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4권 제4호)

국내에서 발간된 문헌정보학 용어사전에서는 참조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다.¹⁹⁾

“하나의 표목에서 다른 표목으로 지시하고 안내하는 것으로 상호참조라고도 한다. 목록 체계에서 사용되지 않는 표목으로부터, 채택된 해당표목으로 안내하는 것을 ‘~보라참조’, 또는 직접참조라고 하고, 상호관련된 표목으로 안내하는 것을 ‘~도 보라참조’ 또는 연결 참조라고 한다. 이와 같은 지시를 포함한 목록저록을 참조저록이라고 하는데 카드목록에서는 참조카드라고 한다. 특히 주제명목록을 자모순으로 배열, 편성함으로써 필연적으로 야기되는 관련 표목의 분산을 방지하고 이들 표목을 상호연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수의 동의어를 하나의 표목으로 집중하기 위하여, 주제명참조저록을 충분히 작성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주제명참조 중 일반적인 주제명에서 개별적이고 한정적인 주제명으로 일괄해서 지시하는 참조를 일반참조라고 한다”.

따라서 영미목록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호참조의 정의를 그대로를 적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상의 정의를 통해서, 참조는 초기의 목록규칙(파니찌와 쥬이트 목록규칙)에서는 상호 참조라는 용어만을 사용하였으며, 카터의 사전체목록에서는 주제명에 상호참조를 사용하고, 그밖에는 참조를 사용하도록 하여 상호참조와 참조의 사용범위를 분명히 구분하였으며, 부출저록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최근의 목록규칙(AACR2)에서 참조는 연결기능을 하는 ‘보라참조’와 ‘도보라참조’, ‘이름-서명참조’와 이용자의 이해를 돋기 위해서 ‘설명참조’가 있어 참조의 기능을 보완하고 있다.

‘보라참조’는 표목으로 사용되지 않은 이름이나 용어의 형식으로부터 표목으로 채택된 이름이나 용어로 참조지시하는 것이고, ‘도보라참조’는 사전체목록에서 주로 사용되는 참조이나 분류목록에서도 사용되는 것으로, 한 표목에서 관련된 다른 표목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한편 일반참조는 이용자가 어떤 주제와 관련하여 찾으리라고 예상되는 표목의 종류에 대하여 작성해주는 것으로서, 목록에 있어서의 총괄적인 참조이며, 설명참조는 보라참조나 도보라 참조로는 충분한 안내를 할 수 없을 경우에 더 자세한 안내를 해줄 수 있도록 부연 설명하는 것이다.

19) 사공철 등편, 문헌정보학 용어사전(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1996), p.358.

III. 국외목록규칙상에서 참조의 규정

참조는 1400-1412년 경에 Ampronius Ratnick de Berka에 의해서 편찬된 목록에서 상호참조 자체는 아니지만 일종의 내용주기에 추가하여 동일한 단어가 있는 다른 도서로 안내하는 것으로 현재의 분출저록에 가까운 참조로 볼 수 있는 것이 있었다.²⁰⁾

1491년에서 1497년 사이에 편찬된 St. Augustine 도서관 목록에서 처음으로 중세목록의 상호참조의 유일한 예로 보이는 상호참조시스템이 발견되었는데, 여기서 상호참조는 항상 “non hic quia infra”나 “non hic quia sufra”라는 문구로 시작되며, 복잡하지만 어떤 책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본이 있는지를 직접 보여준 것이다.²¹⁾

1620년 보들레이(Bodleian) 목록규칙 중에 Quare, 즉 보라를 의미하는 문자 ‘Q’로 시작하는 상호참조를 규정하였고,²²⁾ 1674년 판에서는 역자와 저작물의 저자를 상호참조하였다.²³⁾

이와 같이 15-17세기에도 상호참조라는 용어가 통용은 되었으나 부출저록이나 분출저록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었으며, 일반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원칙은 없었다. 상호참조에 관한 규칙이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현대 목록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1841년 Anthony Panizzi의 「대영박물관도서관목록규칙」 또는 Panizzi의 91규칙이라고 하는 것으로, 상호참조에 대해 정의를 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각 규칙에서 상호참조를 제시하고 있다. 파니찌 규칙 이후 상호참조는 보라참조와 도보라참조의 두 개의 범주로 발전하였으며, 참조는 1904년 카터의 사전체목록에서 처음으로 정의되었다. 1941년 규칙에서부터 참조에 대한 규칙이 급격히 증가하여, 일반참조와 더불어 설명참조가 출현하였으며, 현재의 AACR2에 이르기까지 목록규칙의 주요 부분으로서 발전하여 왔다.

1. 파니찌의 규칙

파니찌 목록규칙은 당시에 주로 사용되었던 책자목록과 카드목록에 적합한 규칙이었다. 책자목록의 규모와 관련된 경제적인 제약과 카드목록을 직접 손으로 작성하는데 소요되는 엄청난 시간으로 인해, 서지자료를 하나의 “저록”으로만 완전히 기술하도록 규정하고, 완전한 접근점을 제공하고 장서의 단순한 검색리스트나 장서점검용 리스트 보다는 좀 더

20) 志村尚夫, “資料組織論における連結語としての参照の意義,” 図短大紀, 6(1982), 102.

21) Dorothy May Norris, *A History of Cataloguing and Cataloguing Methods, 1100-1850: With an Introductory Survey of Ancient Times*, (London : Grafton & Co., 1939), pp.114-116.

22) *Ibid.*, p.148.

23) *Ibid.*, p.151.

8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4권 제4호)

나은 목록을 만들기 위해서, “상호참조”를 사용하도록 규정하였다.

파니찌 목록규칙에서 상호참조는 1) 이름과 이름, 2) 이름과 저작, 3) 저작과 저작의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1) 이름과 이름의 참조

- (1) 귀족의 작위와, 대주교 또는 주교의 교구명으로부터(LVI),
- (2) 군주 또는 왕족 이외에는, 가족명으로부터(LVII),
- (3) 저자명의 다른 철자 또는 다른 형식의 이름으로부터(LVIII),
- (4) 저자명의 다른 이름 또는 성으로부터(LIX),
- (5) 가명일 경우, 상호참조에서 pseud.을 덧붙여서 기재하고(LX) 기본표목으로 참조한다.

즉, 이름과 이름 참조의 경우에는 특정저자가 이름을 변경하거나 또는 다른 형식의 이름을 사용하므로써 동일인의 이름이 여러 가지로 표현될 경우에 기본표목으로 채택된 이름으로 보라참조를 작성하여 특정 저자의 저작을 한곳에 모으기 위한 것이다.

2) 이름과 저작 참조와 저작과 저작 참조

- (1) 편집자 또는 전기작가로부터(LXI),
- (2) 저자의 익명이나 필명, 공저자나 계승 저술자, 역자, 주석자, 해설자로부터(LXII),
- (3) 피전자명으로부터(LXIII),
- (4) 동등한 저작책임이 있는 저자로부터(LXIV),
- (5) 주석서나 해설서의 경우에 원작자 또는 부분 저작의 저자로부터(LXV),
- (6) 총서 중의 특정 저작의 저자로부터(LXVI),
- (7) 다작가 또는 역자의 총서에 포함된 특정 저작의 저자로부터(LXVII),
- (8) 민사소송 당사자로부터, 그리고 관련 법률은 주 또는 국명, 취조 조항을 공표하는 교회재판소의 상관명으로부터(LXVIII) 기본표목으로 참조하도록 하였다

즉, 이름과 저작 참조의 경우에는 특정 저자명의 상이한 형식을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저작에 기재된 인명이나 단체명, 서명으로부터 기본표목으로 참조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부출저록과 분출저록을 대신하고 있고, 저작과 저작 참조의 경우에는 가장 일반적으로 이용자를 한 저작에서 다른 저작으로, 한 저작의 일부에서 전체 저작으로 안내하기 위한 것이다.

이상과 같이 파니찌의 91조 규칙에서는 완전저록을 작성하고, 필요하다면 간략저록을 사용하여 1) 이름과 이름, 2) 이름과 저작, 3) 저작과 저작으로 보라참조를 작성하도록 하였지만, 이름과 저작 참조와, 저작과 저작 참조는 표현은 참조로 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의미로는 부출저록과 분출저록을 대신하는 경우로, 특정 저자가 다르게 표현되는 경우가

아니고 특정 저작에서 동시에 나타나는 개인, 단체, 서명으로부터 기본표목으로 참조하는 것으로 상호참조, 부출저록, 분출저록을 동시에 상호참조로 처리하도록 하였다.

2. 쥬이트의 규칙

쥬이트는 연판인쇄용으로 스미소니언(Smithsonian)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이것은 목록을 작성하고 인쇄하기 위해서 그 실용가능성과 중요성을 판단하는 수단을 제공하고, 사서를 위한 실무편람의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이었다. 쥬이트가 목록카드를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연판인쇄를 주장했던 것은 1901년 LC에서 인쇄카드를 배포하면서 결실을 맺게 되었다. 지금까지는 하나의 완전자록을 작성하고 나머지는 간략저록을 작성하여 사용하던 것이 연판인쇄로 완전자록을 필요한 만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부출저록의 도입과 더불어 기존의 상호참조와 혼용되면서 지금까지 혼란이 거듭되고 있다.

이 규칙은 책자목록을 위한 규칙으로 파니찌의 목록규칙과 마찬가지로 완전자록은 기본저록에만 하고 다른 저록은 참조로써 안내하도록 하였다. 기술부는 표제면상에 있는 그대로 저자, 편집자, 번역자, 주석자, 계승자 등의 이름을 포함하여 정확하게 전사되어야 하며, 개개의 자료는 완전자록으로 기입되고, 다른 저록은 이 완전자록으로 참조되며, 이를 상호참조라고 한다. 또한 참조는 1) 상호참조를 작성하는 경우(XXX)와, 2) 표제면에 상호참조 대상자가 제시된 경우(XXXI)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규정하고 있다.²⁴⁾

1) 상호참조를 작성하는 경우

- (1) 표목으로 채택된 이름과 다른 형식의 이름으로부터(XXX 1),
- (2) 저자가 사용한 이름이나 널리 알려진 이름으로부터(XXX 2),
- (3) 단체명에 포함된 중요한 단어나(XXX 3) 하위부서명으로부터(XXX 4),
- (4) 필명의 저작에서 추정되는 저자명으로부터(XXX 5),
- (5) 성 대신 사용된 귀족 칭호나 관직명, 또는 작위로부터(XXX 6),
- (6) 군주 또는 왕족 이외에, 세례명이나 가족명으로부터(XXX 7),
- (7) 성경에서 부분 성경명과 그 저작의 저자명으로부터(XXX 8),
- (8) 연속간행물의 변경전 표제로부터 기본표목으로 보라참조를 작성하였다(XXX 9).

즉 개인명, 단체명, 서명의 다른 이름이나, 이름의 다른 형식으로 표현될 경우, 보라참조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24) Jewett, *op. cit.*, pp. 57-58.

2) 표제면에 상호참조 대상자가 제시된 경우

두번 이상 완전저록을 작성하지 않기 위해서 채택된 것으로, 참조의 대상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 (1) 역자, 편집자, 주석자, 계승자로부터(XXXI 1),
- (2) 피전자, 피해설자로부터(XXXI 2),
- (3) 피주석자로부터(XXXI 3),
- (4) 전집에 수록된 특정 저작의 저자로부터(XXXI 4),
- (5) 무저자명의 저작의 표제에 포함되어 검색어로 사용되는 단어로부터(XXXI 5),
- (6) 무저자명 저작의 추정저자로부터(XXXI 6),
- (7) 민사소송에서 원고와 피고, 형사소송에서 피고로부터(XXXI 7),
- (8) 연속간행물의 이전 편집자로부터 채택된 표목으로 참조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파니찌의 목록규칙에서와 마찬가지로 부출저록과 분출저록의 개념과 동일시되고 있다(XXXI 8).

이상과 같이 쥬이트의 목록규칙에서 참조는 상호참조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표목사항에 있는 모든 규칙에서 표목으로 채택되지 않은 관련된 다른 모든 표목들은 일일이 상호참조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참조는 보라참조의 기능을 하고 있으나, 엄격한 의미로는 상호참조를 작성하는 경우는 보라참조의 기능을 하고, 표제면에 상호참조 대상자가 분명하게 나타나 있을 경우에 보라참조를 작성하는 것은 참조가 부출저록과 분출저록을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파니찌의 목록규칙에서와 마찬가지로 참조의 기능이 참조, 부출저록, 분출저록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3. 카터의 규칙

사전체목록은 1876년 초판에서 이전의 어느 규칙에서도 시도하지 않았던 목록규칙을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목록의 기능을 제시하였다.²⁵⁾ 목록의 기능은 카터의 사전체 목록에서 비롯되어 파리원칙회의²⁶⁾에서 재확인되었는데, 목록의 첫째 기능은 저자나 서명으로 특정 자료의 소장여부와 자료를 검색하기 위한 것이고, 둘째 기능은 동일 저자의 문헌과 특정 저작의 어느 판이나 번역판을 소장하고 있는가를 제시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25) Cutter, *op. cit.*, p.3.

26) IFLA,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ataloguing Principles, Report. Paris. 9th-18th, 1961* (London : The Organizing Committee of the ICCP on Cataloguing Principles, c/o National Central Library, 1963).

카터는 이러한 목록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① 관련 참조를 포함한 저자저록, ② 서명저록 또는 서명참조, ③ 주제저록, 상호참조, 분류주제명표, ④ 형식표목과 언어표목, ⑤ 필요한 경우에는 주기사항과 함께 판과 발행사항을 제시하도록 하여²⁷⁾ 참조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앞서 지적과 같이 파니찌의 규칙에서는 참조는 보라참조인 반면, 도보라 참조는 주제명을 연결하기 위해 카터의 규칙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이 초판에서는 두 개의 주제명 표목간을 연결하기 위한 장치로 도보라참조를 사용한 반면, 4판에서는 상이한 철자의 성을 지닌 이름간을 연결하는데 도보라참조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1908 목록규칙에서는 도보라참조를 확장하였는데, 예를 들면, 부서장으로서 저작활동을 한 개인의 저작물은 그 부서명도 검색할 수 있도록 도보라참조를 작성하며, 교황도 그의 공직명으로 도보라참조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²⁸⁾

카터의 사전체목록에서 규정하고 있는 참조는 1) 저자저록, 2) 서명저록, 3) 주제저록 아래 필요에 따라 참조를 작성하도록 규정하였으며, §110-112에서 저자저록과 서명저록에서 규정하고 있는 참조를 집합하였다. 이는 대부분의 목록규칙에서 사용하고 있는 참조에 관한 기술방식이다.

1) 저자저록

저자저록에서는 개인명, 단체명, 저자 대용으로 구분하여 참조를 규정하였다.

(1) 개인명

개인명은 세가지로 구분하여 채택하도록 하였다. ① 누구를 저자로 인정할 것인가, ② 이름의 어느 부분을 기본표목으로 할 것인가, ③ 어떤 형식의 이름을 기본표목으로 할 것인가에 따라 기본표목을 채택하고 나머지는 참조를 작성하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① 누구를 저자로 인정하느냐에 따라 기본표목으로 채택되지 않은 이름에서 채택된 이름으로 참조를 작성하는 경우로, 무저자명 저작의 서명 첫 단어(§2), 공저자(§3), 학위논문 논문심사위원과 청구자(§6), 필명(§7), 삽화가(§8), 설계가, 지도제작자, 조각가(§9), 사진작가(§10), 작사자와 작곡자(§11), 주석자(§14), 속편, 서론 등 저작의 일부 저작책임자(§16), 보고자, 역자, 편집자(§21) 등 저작에 일부라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저자로부터 기본표목으로 참조를 작성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이는 참조라기 보다는 부출저록의 기능으로 이해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으로 보인다.

② 이름의 어느 부분을 기본표목으로 채택하느냐에 따라 개인명의 성명에서 기본표목

27) Cutter, *op. cit.*, p.12.

28) Barbara Ann Barn Tillett, *Bibliographic Relationships : Toward a Conceptual Structure of Bibliographic Information used in Cataloging* (Los Angeles : University of California, 1987), pp.93-94.

으로 채택하는 형식으로 참조를 작성하는 경우로, 군주를 비롯한 유대의 랍비의 이름의 다른 언어 형식(§23ae, §30), 성직자나 귀족의 가족명(§23bc, §25), 영어 형식의 가톨릭 관할구와 관구명(§24b), 치녀명 또는 사용하지 않는 기혼여성명(§24c), 복합성(§28), 접두어를 포함한 외국인명(§29), 변경된 이름(§40) 등과 같이 개인명이 상이한 이름이나 상이한 형식의 이름일 경우 기본표목으로 채택된 이름으로 참조를 작성하도록 규정하였다.

③ 어떤 형식의 이름을 기본표목으로 채택하느냐에 따라 개인명을 부분적으로 선택하거나 불완전하고 부정확한 형식, 또는 외국인명의 형식, 그리고 철자나 번역, 음역으로 인해 표현되는 모든 형식으로부터 기본표목으로 참조를 작성하도록 규정하였다(§32-41).

개인명에 관한 참조는 표목과 다른 형식의 인명에서 채택된 표목으로 단순히 연결하는 참조가 아니라 일부 기능은 부출저록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2) 단체명

단체를 저자로 인정하고, 단체명의 취급과 관련하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단체명을 어떻게 규정하고, 어떤 형식의 이름을 표목으로 사용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① 단체명에서 모든 변형된 형식의 협회명, 협회명의 중요한 단어, 협회의 소재지명, 네델란드협회명, 베를린의 왕실협회명, 대학, 미술관이나 박물관 등과 같이 협회와 관련된 단어는 기본표목으로 채택된 단체명으로 참조하도록 규정하였고(§95),

② 지명이나 회의명은 공문서의 저자로부터 지명으로(§46-58), 회의에 참석한 국명으로부터 회의개최지명으로(§57), 총회가 개최된 지명에서 개최한 단체명으로(§63, §93) 참조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보라참조의 기능을 하고 있다.

(3) 저자 대용

저자 이외에 편집자, 역자, 삽도자, 지도제작자, 조각가 등으로부터 참조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종류의 필수적인 참조의 부류는 간행물명에 포함된 편집자, 저작과 관련하여 관습적으로 사용된 편집자와 역자, 시를 번역한 번역자, 원작의 서명이 잘 알려지지 않은 저작의 역자, 동양의 저작물의 번역자나 편집자 등의 이름으로부터 참조를 작성하도록 하였다(§111).

(4) 설명주기

카터의 규칙에서 처음으로 참조를 작성하는 것 이외에, 다양한 저록방법이나 목록규칙을 설명하기 위해서, Congress, Parliament, Academies, Societies, Universities, Museums, Galleries, Libraries 등과 같은 단어 아래 설명주기를 작성하고, 무저자명저작에서 저자명이 확실하게 알려지지 않았을 경우에도 설명주기를 작성하도록 하였다(§112).

2) 서명저록

서명저록의 경우는 모든 무저자명 저작은 서명의 첫단어를 기본표목으로 채택하도록 규정하였으며(§128), 총서의 일부를 이루는 무저자명 저작(§131), 정기간행물의 변경된 표제(§133), 모든 산문 소설의 첫 번째 단어(§135), 관사로 시작하는 서명(§136, 137), 총서번호를 표현하는 단어로 시작하는 서명(§138), 서명 첫 단어의 철자가 상이한 경우(§140), 서명의 상이한 형식(§143), 다른 판에서 변경된 서명(§144), 다권본에서 서명이 변경된 무저자명 저작(§147), 연극이나 시의 처음 단어(§148), 서명의 첫 단어(§149), 학회나 정부기관명으로 목록된 모든 저작(§153), 하위서명과 약표제(§154), 예술작품(§155) 등은 서명참조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상과 같이 사전체목록에서는 저자저록에서 참조를 작성하는 경우는 매우 상세하고 다양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항상 목록작성자의 판단에 따라 접근점으로 예상되는 형식의 이름으로 참조를 작성하고, 부족하면 설명주기를 작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므로써 참조의 기능을 확장하여 목록작성자와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접근점을 제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서명을 기본표목으로 채택하는 비중도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서명저록은 이후에 AACR1에서 통일서명에 관한 규칙으로 발전되었다. 또한 서명저록에서도 참조를 작성하는 경우와 주기, 부출저록을 작성하는 경우가 구별되지 않고 모두 참조를 작성하도록 하여, 실제는 참조와 부출저록이 혼용되고 있다.

3) 주제명

주제명은 상이한 주제간에서 채택하고 상이한 형식간에서 채택한다. 상이한 주제간에는 일반주제와 특수주제, 개인과 국가, 사건과 국가, 주제와 국가, 중복되는 주제인 경우, 특정 주제명을 채택하고, 상이한 형식간에는 언어와 동의어, 주제어와 주제, 동형이의어, 복합표목에서 채택한다.

채택된 주제명에 대해서는 일반주제로부터 하위주제로 혹은 대등한 주제나 예증적인 주제로(§187) 참조를 작성하거나 특수주제로부터 일반주제로(§188) 참조를 작성한다.

주제명에서 상호참조 또는 참조를 기술하는 방법은 ‘보라’ 또는 ‘도보라’를 사용하고, 간단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또한 간결하지만 이용자에게 편리함을 제공해야 하고, 때로는 저록의 다른 부분보다 작은 활자로 인쇄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사전체목록에서는 주제명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구로도 상호참조를 사용하였다. 즉 사전체목록의 배열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주제의 분산을 방지하고 이를 주제간을 연결하는 수단으로 참조를 사용하게 된 것이다.

카터의 목록규칙에서 저록은 목록에서 도서에 관한 완전한 기록이었으며, 반면에 참조

는 발행사항이 생략된 간략한 저록이었다. 그런데 저자저록과 서명저목록에서는 참조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상호참조라는 용어는 하나의 주제명에서 다른 주제명으로 참조하는 의미로만 사용되었으며, 저자목록과 주제명목록에서는 기본표목의 채택 항목에서 필요하면 참조를 작성하도록 지시하면서 별도로 참조를 규정한 반면에 서명목록에서는 별도로 참조에 관한 규정없이 각 항목에서 필요하면 참조를 작성하도록 규정하였다.

저자저록의 개인명에서 '개인명에서 기본표목으로 채택할 이름'은 참조가 부출저록을 대신하는 것이고, '개인명에서 기본표목으로 채택할 부분과 형식'은 개인명 기본표목을 채택하고 나머지는 참조를 작성하도록 하여 보라참조의 기능을 하고 있으며, 단체명이나 서명에서는 참조와 부출저록을 별도 구분없이 보라참조를 지시하고 있다. 그리고 처음으로 설명주기와 주제명에 관한 참조를 규정하고 있으며, 주제명에서만 도보라참조를 사용하고 있다.

사전체목록에서 참조는 저록만큼 많은 규정이 있고, 참조가 여러 서명을 대신하지 못할 경우에는 언제나 발행사항이 제공되어야 하기 때문에 비경제적이다. 이에 대해서 카터는 1904년의 그의 목록규칙 4판에서 경제성을 이유로 부출저록을 작성하도록 하였지만 그것을 참조라고 지칭하므로써 더욱더 혼란을 조장하였다.

그러나 부출저록이 참조를 대신하는 경우나 참조가 인쇄카드목록에서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언급한 바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이름의 이형에 대해서는 참조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서지레코드에 접근하기 위해 참조나 부출저록의 사용을 특별히 규정하지 않은 채 양자택일규정으로 설정하였다.

4. ALA 1949

AA Code와 같은 철학적 배경에서 1941년 목록규칙 개정판의 예비판이 출판되었다. 그러나 AA Code와 규칙 내용은 같고 단지 개정되면서 특정한 문제를 일일이 규칙화하여 서지기술규칙이 너무 자세하게 되어, 이를 적용하는 경우 목록비용이 너무 많이 들 것이라는 이유로 비판을 받게 되었고,²⁹⁾ 1944년 미국도서관협회의 목록규칙개정위원회는 당시의 예비판(ALA 1941)을 토대로 저록과 표목을 다시 검토하여 ALA 목록규칙(ALA 1949)을 발표하게 되었다. 이 규칙은 실제로는 LC의 목록 관행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개인명과 단체명, 지명표목, 부출표목과 참조에 관한 규칙 등 표목의 선정과 형식을 규정한 규칙이다.

ALA1949에서 참조는 보라참조를 사용하여 다수의 표목으로부터 채택된 표목으로 안내하거나, 또는 도보라참조를 사용하여 관련된 자료를 찾을 수 있는 다른 표목을 지시하는 기능으로 규정되었다. 이 규칙에서도 도보라참조는 대개 주제명표목에 적용하도록 규정하

29) 정용선, “기본기입의 이론과 역사적 배경: 영·미중심으로,” 이화여대 도서관학과 창립 20주년 기념논문집 (서울 : 이화여자대학교 도서관학과, 1979), p.268.

고 있다.

참조를 작성하는데 있어서는 ① 참조되는 표목 아래 저록이 항상 있어야 하고, ② 도보라참조로 작성되는 표목이 있어야 하고, ③ 모든 참조는 장래의 변화에 대비해서 신중하게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표목의 종류와 무관하게 둘 이상의 상이한 형식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다른 형식의 표목에서 채택된 표목형식으로 참조를 작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이후 AACR1(ALA 1967)과 AACR2(ALA 1978)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ALA 1949에서 참조를 작성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1) 완전명에서 간략형식의 표목으로(158A),
- 2) 본명에서 채택된 속명이나 세례명으로, 또는 그 반대로(158B,C),
- 3) 복합명의 한 요소에서 표목으로 채택된 요소로(158D),
- 4) 접두어를 포함한 이름에서 접두어 다음에 오는 이름으로, 또는 그 반대로(158E),
- 5) 가족명에서 직위로, 또는 그 반대로(158F),
- 6) 처녀명에서 결혼 후의 이름으로, 또는 그 반대로(158G),
- 7) 필명에서 본명으로, 또는 그 반대로(158H),
- 8) Aristides, Spectator 등과 같은 필명이 다른 작가에 의해서 사용되었을 경우에 참조에 간단한 서명을 포함한 이름-서명참조를 작성하고(158I),
- 9) 특정 저자의 저작이 개인명표목으로 사용되고 아울러 관직명을 표목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도보라참조로 이들 표목간을 연결한다(158J).
- 10) 동일한 이름이 상이한 철자로 사용된 경우, 이들간을 도보라참조로 연결한다.
- 유사한 경우로 왕족, 공주, 그리고 성인의 이름으로 Catharine와 같은 이름은 사용언어에 따라 달리 표현되는 철자로(158K),
- 11) 단체명아래 기입된 단체는 장소로부터, 장소아래 기입된 단체는 단체명으로부터 참조를 작성한다. 단체명이 변경되었거나 형식이 변경된 경우에는 알려진 단체명에서 채택된 표목으로 참조를 작성한다. 고유한 단어가 단체명의 첫 단어로 사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도치형식으로부터 참조를 작성한다(158L).
- 12) 국가문서 또는 지방 공문서에서 지리명이 지역이 아니고 저자로 사용되었을 경우에, 일반적으로 그 기관 이름으로 불려지지 않는 한 보통 기관의 참조는 필요없다(158M).
- 13) 하위단체는 상위단체로부터 참조하고, 또는 그 반대로(158N),
- 14) 연속간행물이 지닌 지명(誌名)에서 채택된 지명(誌名)으로 참조한다. 결호 없이 완질을 갖춘 연속간행물의 경우에는 부출저록을 참조 대신 사용할 수 있다(158O).
- 15) 무저자명 고전이 여러 가지 서명으로 알려졌을 경우, 개개의 서명에서 통일표목으로 참조하고(158P),
- 16) 단순한 참조로서는 특정 유형의 표목을 처리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분명하게 표

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설명참조를 작성한다(158Q).

이상과 같이 ALA 목록규칙은 참조의 유형이나 참조의 대상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았지만 개인명, 단체명, 서명을 참조 대상으로 하고, 보라참조, 도보라참조, 이름-서명참조, 설명참조를 사용하고 있으며, 부출저록과 참조를 혼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정 저작의 여러 판이 서명에 변화가 거의 없는 경우, 서명에서 저자로,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편집자에서 서명으로 참조를 작성하여 부출저록을 대신할 수 있다.

5. AACR

출판물의 증가와 문화교류가 활발해지면서 국제간의 목록의 표준화가 절실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IFLA는 이러한 관점에서 1954년에 공식적으로 목록원칙의 표준화작업에 착수하여 유네스코의 협조로 목록원칙국제조정연구부(IFLA Working Group on International Coordinating of Cataloguing Principles)를 설치하고 목록문제를 연구 검토하기 위한 국제 목록원칙회의를 파리에서 개최하여 저록과 표목의 채택에 있어 통일된 원칙을 제정하였다. 이 파리원칙은 AACR1에서는 부분적으로 수용되었으나, AACR2에 이르러 표목의 채택에 이 원칙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

AACR1에서는 참조대상을 개인명, 단체명, 법률관계 출판물에 대한 특별 표목, 통일서명, 종합서명으로 구분하였으며, 부출저록 대신에 참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참조의 종류로는 보라참조, 도보라참조, 저자-서명참조, 설명참조가 있다. 먼저 대상을 구분하고 각 대상에 적합한 참조를 지시하였으나 실제로 대부분이 보라참조 또는 설명참조를 가지고 있으며, 도보라참조는 단체명에서만 작성하도록 하였다. 도보라참조는 목록규칙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주로 주제명표목표에서 사용되고 있다.

AACR2에서는 지금까지의 상호참조에 관한 것을 총망라하여 참조의 대상을 크게 개인명, 지명과 단체명, 통일서명으로 구분하였다. 참조의 종류는 AACR1과 마찬가지로 보라참조, 도보라참조, 이름-서명참조, 설명참조의 4가지로 구분하여 각각의 참조대상의 특성에 따라 이들을 적절하게 적용하여 이용자들이 효율적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이전의 모든 목록규칙들과 같은 참조의 기능을 지니며, 대부분이 저자와 서명에 대한 보라 참조에 관한 규정이며, 굳이 도보라 참조로 구분하는데는 그다지 큰 의미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이름-서명 참조와 설명참조는 이용자들의 자료선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보라참조와 도보라참조를 보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AACR2가 AACR1과 다른 점은 개인명에 도보라참조를 추가하였으며, AACR1에서 법률관련 문헌에 대한 특수표목과 통일서명, 종합서명으로 구분하여 보라참조를 작성하도록 규정한 것을 AACR2에서는 모두 통일서명의 유형으로 처리하여 보라참조와 도보라참조, 설명참조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AACR1에 비해 도보라참조에 관한 규정이 확대되

었다.

AACR1과 AACR2는 둘 다 이미 개인명표목, 단체명표목, 통일서명에 관한 규칙에서 필요로 하는 특정한 종류의 참조를 지시하였는데, 이는 앞에서 언급한 다른 목록규칙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던 형식이다. 덧붙여서 AACR1은 제5장 참조에서, AACR2는 더 일반적인 규칙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참조를 작성할 때는 그 대상이 되는 이름과 통일서명을 기본표목으로 하는 저록이 목록상에 있어야 하고, 참조를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참조의 대상이 되는 이름과 통일서명을 기본표목으로 하는 모든 참조레코드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³⁰⁾³¹⁾

1) 보라참조

(1) AACR1

AACR1에서 보라참조는 개인명이나 단체명, 한 저작의 서명이 기본표목의 형식과 다를 경우에 기본표목으로 안내하기 위한 것이다. 카터가 저자저록에서 구분한 것과 마찬가지로, 개인명이나 단체명, 서명에서 사용된 표목과 다른 표현형식은 ① 다른 이름이나 서명, ② 다른 형식의 이름이나 서명, ③ 다른 기입 요소로서 이름이나 서명으로 세 가지 경우로 구분하였다.

① 개인명이나 단체명이 변경된 경우, ② 개인명이 다른 언어로 표현되거나, 완전명을 사용하거나, 철자가 변경되어 다른 형식으로 표현되는 경우, ③ 개인명과 단체명의 구성요소 중에서 일부만을 개인명 또는 단체명으로 사용한 경우와, 특히 개인명은 성과 다른 귀족칭호, 복합성의 다른 요소, 접두어를 사용하는 성, 이름에 사용되는 칭호나 경칭이 있어 표목으로 채택된 이름과 다른 요소를 사용하는 경우, 그밖에 ④ 자국 아래 기입된 양국간의 조약의 경우, ⑤ 헌법이나 헌장에 상이한 부표목을 사용하였을 경우와, 법률을 의미하는 날말 또는 구를 포함하고 있을 경우에, 기본표목으로 보라참조를 작성한다.

(2) AACR2

AACR2에서 보라참조는 AACR1과 마찬가지로 개인명과 단체명, 지명에서 ① 이름이 변경되어 다른 이름이 사용되거나, ② 번자체계나 완전형, 축약형 등으로 인하여 다른 표현 형식을 사용하거나, ③ 이름의 구성요소에서 다른 구성요소를 사용할 경우에 명칭의 어느 것이라도 표목으로 채택된 형식으로 보라참조를 작성한다. 이러한 보라참조는 개인명이 복합성이거나 또는 관사나 전치사가 있는 성을 가진 저자에 대한 성의 요소를 결정하는데 따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그밖에 단체명과 지명에서 ① 회의명은 일반회의명에서 특수회의명으로, ② 표목이 두

30)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Anglo-American Cataloging Rules, North American Text*, p.175.

31)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Anglo-American Cataloging Rules*. 2nd ed. Rev. p.540.

문자나 약어로 구성되어 있고, 목록에서 마침표가 있는 두문자어와 마침표가 없는 두문자어를 달리 배열하는 경우, 하나의 형식에서 어느 것이거나 표목으로 채택된 형식으로, ③ 목록에서 단어로 표현된 서수와 아라비아숫자나 로마 숫자로 표현된 숫자를 달리 배열하는 경우, 수로 표현된다면 단어로 표현된 숫자를 가진 표목형식으로부터, 또는 그 반대로, ④ 목록에서 약어와 완전어가 달리 배열되거나, 표목이 약어로 시작하거나, 표목의 배열에 영향을 준다면, 약어로부터 완전어로 참조한다.

통일서명은 ① 특정 저작의 상이한 서명이나 서명의 이형(異形)으로부터 통일서명으로, ② 별도로 간행된 한 저작의 구성요소를 독립적인 저록으로 작성하는 경우에, 특정 저작의 구성요소의 서명으로부터 전체 저작에 대한 통일서명의 부표목형식으로, ③ 별도로 간행된 한 저작의 구성요소를 전체 저작의 통일서명으로 목록하는 경우에, 구성요소의 서명으로부터 통일서명으로, ④ 특정 저자의 전집이나 선집이 통일서명 아래 종합목록되었을 경우에는, 주정보원이나 참고문헌에 기재된 이름과 서명으로부터 이름-종합서명으로 참조한다.

총서와 연속간행물의 부출저록에 대한 참조로, ① 별도로 목록된 부분이 속하는 총서의 표목 아래 부출저록이 만들어지거나, ② 연속간행물의 표목 아래 부출저록이 만들어진다면, 다른 표목형식으로부터 그 표목으로 참조한다.

2) 도보라참조

(1) AACR1

AACR1에서 도보라참조는 하나의 표목에서 관련된 다른 표목으로 연결해 주는 것으로, AACR1에서는 단체명의 경우에만 도보라참조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것은 국제회의명이나 외교협상명으로부터 체결된 국제협정 및 평화조약의 통일서명에 대하여, 그리고 그 반대로 도보라참조를 작성하도록 규정하였다.

(2) AACR2

AACR2에서는 도보라참조의 기능을 확장하였다.

개인명은 ① 한 개인의 저작이 두 개의 서로 다른 기본표목으로 기입된 경우에 표목 상호간에 도보라참조를 작성하고, 3 이상의 기본표목으로 기입되는 경우에는 설명참조를 작성하며, ② 알려진 개인명과 알려지지 않은 개인의 별명이 각각 기본표목으로 기입되는 경우, 이 별명에서 이름으로 도보라참조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지명과 단체명은 관련된 단체에 대해 각기 독립적인 단체명을 기본표목으로 기입한 경우에 이를 표목간에 도보라참조를 작성한다.

통일서명은 다른 저작의 구성요소가 아닌 관련된 저작을 상이한 통일서명 아래 저록으로 작성할 경우에, 부출저록 대신 도보라참조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3) 설명참조

(1) AACR1

AACR1에서 간단한 참조보다 더 상세한 안내가 필요할 경우에는 설명참조를 작성하여 관련된 표목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다. 개인이 공직자이거나 접두어가 성과 분리되어 사용될 경우에 접두어가 있는 이름이 어떻게 기입되는지를 제시하기 위해, 그리고 단체명일 경우에는 표목의 범위를 설명하고, 명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 그들간의 관계와 두문자어로 된 단체명에 관해서 설명참조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2) AACR2

AACR2에서 개인명과 단체명에 대한 설명참조는 AACR1과 거의 유사하고, 추가로 특정 참조가 다수의 표목에 적용되는 경우 설명참조를 작성한다.

통일서명은 ① 별도로 간행된 특정 저작의 구성요소를 독립적인 저록으로 작성하는 경우, 주된 저작의 이름표목과 통일서명으로부터 구성요소서명으로 설명참조를 작성하고, ② 특정 저작이 통일서명과 이와 상이한 본서명으로 사용된 경우, 적절한 설명을 지닌 이름표목과 통일서명으로 참조하도록 규정하였다.

4) 이름-서명참조

(1) AACR1

AACR1에서 이름-서명참조를 사용하는 경우는 ① 개인명 보라참조에서 둘 이상의 저자가 같은 필명을 사용하는 경우, ② 법률관련 문헌에서 법률을 공포한 관할구역명이 필요한 경우, ③ 한 저자의 전집 또는 선집을 관용적인 종합서명 아래 목록하였을 경우에 이름에 서명을 붙여서 참조를 작성하여 이용자의 자료선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2) AACR2

AACR2에서 이름-서명참조는, 개인명에서만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이름 참조만으로는 충분한 안내를 할 수 없을 경우에, ① 한 개인의 저작이 둘 이상의 상이한 표목을 기본표목으로 하거나, 특정 저작의 특정 판에 기재된 이름이 그 저작의 기본표목으로 사용된 이름과 다를 경우, ② 두문자를 기본표목으로 하는 저작은 두문자의 도치형식으로부터 직순 형식으로, ③ 두 명 이상의 개인이 동일한 필명을 사용하고 그 중 한사람 이상이 다른 이름으로 기입된 경우에는 개인의 필명으로부터, ④ 필명이 두문자나 문자열, 또는 숫자로 구성된 경우에는 본명으로부터 이름-서명 참조를 작성한다.

5) 부출저록을 대신하는 참조

AACR1에서 특정 저작에 여러판이 있어 동일한 부출저록을 필요로 할 경우에, 참조를 작성하는 것이 더 간편하고, 시간과 공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경우에는 부출저록 대신 참조를 작성할 수 있다. 이러한 규칙은 참조와 부출저록의 구분을 모호하게 하여 카터 이후에 계속해서 이용자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으며, AACR2까지 계속되고 있다.

결국 참조는 15세기말의 상호참조시스템에서 시작하여 파니찌, 쥬이트, 카터의 상호참조를 거쳐 AACR2의 참조에 이르기까지, 그 본질적인 기능은 특정 저자나 서명에 어떠한 상이한 형식이 출현하더라도 동일한 접근점으로 사용하기 위한 연결장치로서 특정 저작을 검색하고 관련 저작을 집중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다.

그리고 파니찌 규칙 이후 상호참조는 보라참조와 도보라참조의 두 개의 범주로 발전하였으며, 1941년 규칙에서부터 참조에 대한 규칙이 급격히 증가하여, 일반참조와 더불어 설명참조가 출현하였다.

IV. 국내목록규칙상에서 참조의 규정

도태현³²⁾은 한국의 목록규칙 변천과정을 현재까지 밝혀진 우리나라 최초의 목록에서부터 현대적 개념의 목록규칙에 이르기까지 목록규칙의 구성이나 내용적 특성을 중심으로 4단계로 시대구분하였다.

- ① 단식목록 시기 : 1923년 이전
- ② 목록규칙 도입시기 : 1923년부터 1954년 이전까지
- ③ 국제 표준화 시기 : 1954년부터 1980년까지
- ④ 자동화목록 시기 : 1980년부터 현재까지

위의 시대구분에 따라 현대적 의미의 목록규칙을 도입하여 최초의 목록으로 해방후에 편찬된 朝鮮東書編目規則, 東書編目規程-草, 韓國目錄規則(修正版), 韓國目錄規則 3版에 규정된 참조 규정을 고찰하고자 한다.

1. 朝鮮東書編目規則

32) 도태현, 한국의 목록규칙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문현정보학과, 2002), p.13.

1945년 조선도서관협회가 창립되었고 1947년에 개최된 총회에서 전국통일 목록규칙의 제정을 결의하였다. 이때 박봉석은 자신의 東書編目法(講義用草案)³³⁾을 기초로 朝鮮東書編目規則³⁴⁾을 편찬하였으며, 그후 1954년에 朝鮮東書編目規則, 개정판을 발행하였으며 기본 구조가 1948년판과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

이 규칙에는 참조에 관한 독립적인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제2장 총칙 10조에 각 규칙의 각 조항 끝에 []내에 주기한 것은 필요에 따라 참조를 작성하라는 것을 의미하고 각 조항마다 필요에 따라 참조를 작성하라는 지시가 있다.

1) 저자

- (1) 감정서, 판결서류는 재판관, 원고, 피고로부터 기본표목으로(21조),
- (2) 별명, 호 등으로부터 본명으로 보라참조를 작성한다(105조).

2) 서명

- (1) 동일 서명이 2종 이상의 표기법이 있을 경우, 다른 표기로부터 보라참조를 지시하는 발음참조서표를(23조),
- (2) 본서명의 다른 이름으로부터 본서명으로 보라참조를(33조),
- (3) 서명의 일부가 다를 경우, 다른 서명으로부터 기본표목으로 참조를(35조),
- (4) 총서, 전집명이 있더라도 단행본으로 분립저록을 작성할 경우, 총서, 전집명으로부터 참조를 작성하는데(39조), 사실상 분출저록을 작성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이다.

이 규칙에서는 참조의 종류를 서명참조서표, 저자참조서표, 분류참조서표, 관청참조서표, 발음참조서표로 구분하고 목록기입법에서 참조작성법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참조를 작성하도록 규정한 것은 21, 23, 33, 35, 105항 끝에 서명이나 저자의 다른 이름이나 이름의 다른 형식으로부터 기본표목으로 보라참조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것과, 39항 총서나 전집의 경우는 참조를 작성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참조는 사실상 부출저록과 분출저록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2. 東書編目規程(草)

東書編目規程(草) 도서관자료 중 동서의 목록저록에 관한 규정으로 표목의 선정과 형식 6장 146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저자명을 기본표목으로 채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33) 朴奉石 編, 東書編目法 : 講義用草案 : 國立圖書館, 檀紀4280[1947].

34) 朴奉石 編, 朝鮮東書編目規則, 國立圖書館, 檀紀4281[1948].

그리고 목록의 저록을 基本記入, 副出記入, 分出記入, 參照로 구분하였다.

「표목의 선정」에서는 각 조항 끝에 필요에 따라 기본표목으로 채택되지 않은 접근점을 제공하기 위해 부출과 분출기입을 지시하고 있고, 「표목의 형식」에서는 저자의 다른 이름이나 이름의 다른 형식에 대한 접근점을 제공하기 위해 參照記入을 지시하고 있다.

이 규칙에서 참조는 개인명, 단체명, 서명 등이 둘 이상의 형식에서 표목으로 채택될 때 또는 둘 이상의 발음으로 표기될 때 채택된 표목을 다른 형식으로부터 보라참조를 작성하고, 단체명, 서명 등에 대하여 둘 이상의 표목이 기본표목으로 채택될 때 각표목 상호간에 도보라 참조를 작성하도록 규정하였다.

1) 개인명

- (1) 성명을 개칭한 저자명으로부터(63조),
- (2) 별명, 아호, 통칭 등으로부터(66조),
- (3) 불가는 「釋」 다음에 승명을 기본표목으로 채택하고 尼는 「尼」라고 附記한다. 시호와 사찰 이름으로부터, 승명으로부터(68조),
- (4) 한자식표기의 서양인명으로부터(69조),
- (5) 전치사를 가진 서양인명으로부터(70조 가),
- (6) 고대의 希臘, 羅典 시대인의 영어 또는 그리스어형 이름으로부터(70조 라),
- (7) 중세이후의 저자의 라틴어형의 성명 또는 본명으로부터(70조 마),
- (8) 귀족의 이전 칭호로부터(70조 사) 기본표목으로 보라참조를 작성하도록 규정하였다.

2) 단체명

- (1) 약칭 또는 통칭이 불완전한 단체명으로부터(72조),
- (2) 국제적으로 조직된 연합, 학회, 협회, 회의 등의 약칭으로부터(81조),
- (3) 외국의 관공서, 공공기관, 기타 단체의 국명이나 약칭으로부터(82조) 기본표목으로 참조하도록 규정하였다.

3) 서명

- (1) 표제지 또는 권두에서 채택한 서명과 표지, 판권지 등의 서명이 상이할 경우(97조),
- (2) 별서명이나 변경된 서명으로부터(98조),
- (3) 다권본 도서로서 각 책의 상이한 서명으로부터 기본표목으로 참조를 작성한다(99조).

이상에서와 같이 東書編目規程에서 참조는 보라참조와 도보라참조가 있고, 외국목록규칙과 마찬가지로 개인명, 단체명, 서명에서 기본표목을 채택하는 것과 참조를 작성하는 것을 동시에 규정하여, 다른 이름이나 이름의 다른 형식, 변경된 이름이 있을 경우에 기

본표목으로 참조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3. 韓國目錄規則(修正版)

韓國目錄規則³⁵⁾(이하 KCR1이라 칭함)은 韓國圖書館協會에서 미국도서관협회목록규칙(ALA 목록규칙) 1949년판과 이의 추가 개정판을 일차적인 기초자료로 하고, 바티칸도서관목록규칙 1948년판, 朝鮮東西編目規則 1948년판, 일본목록규칙 1952년판을 부차자료로 선택하여 초안을 작성하였으며, ICCP원칙을 채택하여 1964년에 동규칙을 편찬하고 1966년 그 修正版(이하 KCR2라 칭함)을 출판하였다.

KCR2는 내용상 KCR1과 크게 변경된 것은 없지만, 「제1부 표목의 선정」 대신에 「一. 기본기입의 선정」으로 바꾸어 표기하였으며, 각 규칙에 항목번호를 표목부와 기술부를 구분하지 않고 연속적으로 1-142까지의 번호를 부여하였다.

참조는 三. 기술목록규칙 B. 축차간행물 아래 141조에 참조에 관한 항목이 있으며, 참조에는 보라참조와 도보라참조가 있다.

개인명, 단체명 또는 서명 등이 두가지 이상의 형식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채택 안된 표목형식으로부터 채택된 표목에 「~을 보라」라는 참조를 하고 단체명, 서명 등에 대하여 두가지 표목이 목록 가운데 채택되었을 경우에는 그 표목 상호간에 「~도 보라」라는 참조를 한다. 그리고 목록규칙내에서 세부적으로 참조가 필요한 것은 각 조항 끝에 참조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다.

1) 개인명

- (1) 본명, 익명, 별명, 필명 등은 부출 또는 참조한다.
- (2) 저자의 최신 성명 또는 이전 성명으로부터(47조),
- (3) 한국, 중국의 직계 왕족은 봉호는 본명으로부터(49a),
- (4) 승명 이외의 당호, 자호, 사호, 속명, 법명 또는 법위로부터(50조),
- (5) 외국어형의 문자 또는 철자를 사용한 저자명으로부터(51조),
- (6) 19세기 중엽 이전의 인도인명은 가족명 또는 성으로부터, 현대 인도인명은 ① 개인명 ② 부친명 ③ 지명 ④ 사성을 표시하는 계급, 직업, 선조의 종교적, 학술적, 군사적 칭호 또는 그 거주지와 출생지 등을 표시하는 조부명으로부터,(52a),
- (7) 베트남인명의 개인명으로부터(52.b),
- (8) 미얀마인명은 표목으로 채택되지 않은 부분으로부터(52c)
- (9) 화교국인명은 가족명과 칭호로부터(52d),

35) 韓國圖書館協會 編, 韓國目錄規則(서울 : 韓國圖書館協會, 1964).

- (10) 서양인명의 복합성은 성의 둘째 부분으로부터(53a),
- (11) 서양인명이 전치사 또는 관사, 또는 전치사와 관사를 갖는 성으로부터(53c),
- (12) 중세이전의 성도, 사도의 속세명으로부터(58조),
- (13) 고대 희랍 비잔틴 라틴시대의 인명은 영어형 또는 희랍어형으로부터, 중세 이후의 라틴어형 인명은 타형명으로부터 참조한다(59조).

2) 단체명

- (1) 기관명으로부터, 국가명은 정식명칭으로부터 우리나라에서 관용되는 명칭으로(60조),
- (2) 특별시, 직할시, 도, 군, 시는 공공단체기관명으로부터(61a),
- (3) 정부기관명을 제외한 기타 기관 및 단체명의 상용명칭으로부터(71조),
- (4) 명칭이 변경된 단체는 그 저작 당시의 명칭으로부터(73조),
- (5) 국제 단체나 학회 및 회의는 다른 명칭으로부터 한국에서 관용되는 명칭으로 참조 한다(77조)

3) 서명

- (1) 정기간행물의 구지명을 부출 또는 참조한다(6.b.2).
- (2) 이전 신문명으로부터(6.c.2),
- (3) 무저자명 고전으로부터 통일표목으로(38조),
- (4) 동일한 도서의 다른 서명으로부터 기본표목으로 참조한다(84b).

이상에서와 같이 KCR2에서 참조는 東書編目規程에서 마찬가지로 보라참조와 도보라참조 두종류가 있으며, 개인명, 단체명, 서명의 상이한 이름간에 참조를 작성하고, 특히 개인명에서 외국인명의 다른 이름 형식에 관하여 상세하게 참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외국목록규칙에서 나타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참조와 부출저록을 혼용해서 사용하도록 규정한 것도 있다. 비록 참조를 작성하도록 규정하였지만 사실상 부출저록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4. 韓國目錄規則 3版

韓國目錄規則 3版(이하 KCR3이라 칭함)에서는 기술부만을 취급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접근점에 해당하는 표목부에 관한 규칙은 보류하고 있는 상태여서 별도의 참조에 관한 사항 역시 보류되어 있는 상태다. 다만 규칙 1.6 註記事項 아래 1.6.2.4(參照方式)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그 도서안이나 다른 정보원에 표시되어 있는 문구가 목록자의 판단한 바를 뒷받침해 주는 것이거나, 지시하고자 하는 정보가 손쉽게 얻을 수 있는 다른 정보원에 자세히 적혀 있을 경우에는, 목록기입에 이를 자세히 반복 기술하는 것을 피하고 그 출처와 연결시켜 주는 간략한 참조적 기술만 한다.

KCR3에서는 주기사항 아래 서명저자사항에서 총서명사항까지의 정형적 기술부의 사항이나 요소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그 정형화된 기술을 설명하거나 보완하는 것으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추가로 기술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이해를 돋고 있다.

가령 서명저자사항에서는 본서명 이외에 본서명의 앞이나 위에서 수식하는 관칭이나 관제와 본서명의 뒤나 아래에서 수식하는 부서명이나 잡제 등이 있으며, 저작의 책임자에 해당하는 개인에 대한 추가 정보로 필명이나 호, 또는 저자의 특기사항을 기술할 수도 있고, 단체명에 대해서는 축약명이나 완전명과 같은 것을 주기사항에 기술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참조방식은 이러한 모든 사항을 동일한 목록레코드에 기술하는 것보다는 복잡한 것을 피하기 위해 좀 더 추가보완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출처와 연결시켜주는 간략한 참조적 기술만 한다는 것으로 참조, 즉 상호참조와는 그 개념이 다르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참조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국내목록규칙상에서 참조에 관한 규정은 KCR2에서 개인명, 단체명, 서명 등이 두가지 이상의 형식으로 사용될 경우 보라참조를 작성하고, 두가지 표목이 목록에서 채택되었을 경우에는 도보라참조를 작성하도록 상당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그 이후로는 보류되어 있는 설정이다.

V. 결 론

참조는 15세기초에 편찬된 목록에서 상호참조 자체는 아니지만 참조개념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있었다. 이후 15세기말 상호참조시스템에서 시작하여 파니찌의 규칙에서 처음으로 각 규칙에서 참조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있었다. 파니찌 규칙 이후 참조는 보라참조와 도보라참조의 두 개의 범주로 발전하였으며, 1904년 카터의 사전체목록에서 처음으로 정의되었다. 1941년 규칙에서부터 참조에 대한 규칙이 급격히 증가하여, 일반참조와 더불어 설명참조가 출현하였으며, 현재의 AACR2에 이르기까지 목록규칙의 주요 부분으로서 발전하여 왔다.

참조는 초기의 목록규칙(파니찌와 쥬이트 목록규칙)에서는 상호참조라는 용어만을 사용하였으며, 카터의 사전체목록에서는 주제명에 상호참조를 사용하고, 그밖에는 참조를 사

용하도록 하여 상호참조와 참조의 사용범위를 분명히 구분하였다.

참조는 저자, 서명, 주제를 대상으로 하며, 그 종류에는 하나의 표목에서 다른 표목이나 저록으로 안내하는 것과 같이 지시나 연결기능을 지닌 보라참조와 도보라참조, 이러한 참조의 기능을 보완하는 설명참조, 그리고 하나의 표목을 일단의 표목으로 총괄 참조하는 일반참조가 있다. 아울러 그 기능은 채택되지 않은 표목에서 채택된 표목으로, 채택된 표목에서 다른 채택된 표목으로 지시하고 안내함으로써 관련된 문헌을 검색하고 연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참조는 한동안 부출저록과 혼동하여 사용되기도 하였다. 파니찌 시대에 목록이 책자목록이었을 때에는 부출저록에 관한 규정은 만들어지지 않았다. 1901년 인쇄카드의 도입과 더불어 부출저록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출현하게 되었다. 즉, 부출저록이 적은 노력으로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참조를 대신한다고 하여 참조와 부출저록과를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였다. 오히려, 참조를 사용하기보다는 완전한 부출저록을 선호하게 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출저록을 사용할 때와 상호참조를 사용할 때가 더욱더 분명해졌다. 즉 부출저록은 변함없이 서지레코드에 대한 추가 접근점으로 사용되었으며, 상호참조는, 간단하게 참조라고 하면서, 이름이 변형되었을 때 사용되었다.

즉 온라인목록 환경에서는 목록의 개념적 구조를 서지레코드와 제어레코드로 구분하여 서지레코드내에 있는 모든 데이터요소를 접근점으로 사용하여 특정문헌을 찾고 모으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제어레코드내에서 서지레코드내의 중요한 접근점으로서 특정 저자나 특정 서명이 다른 명칭으로 나타나거나 다르게 표현되는 경우에 참조를 통하여 관련 문헌을 연결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참조의 본질적인 기능은 특정 저자나 서명에 어떠한 상이한 형식이 출현하더라도 동일한 접근점으로 사용하기 위한 연결장치로서 특정 저작을 검색하고 관련 저작을 집중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현재와 같은 온라인목록에서는 이론상 모든 데이터 요소가 접근점으로 사용될 수 있고, 게다가 향후 국내에서도 전거제어활동이 활성화될 것을 감안한다면 중요한 접근점의 상이한 형식들을 연결하여 관련저작들을 집중할 수 있는 참조의 역할과 기능을 통하여 이용자들이 특정 접근점의 어떠한 다른 형식의 접근점을 사용하더라도 원하는 자료를 효과적인 검색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